

제336회 도의회 정례회 2차

제1차 건설소방위원회

2022. 11. 28.(월)

#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

건설소방위원회  
전문위원실

#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허 복 의원 대표발의)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허 복 · 박창석 · 박순범 · 이우청 · 정한석 · 김대진 · 정근수 · 김창혁 · 김진엽 · 강만수 · 김창기 · 박승직 · 한창화 · 백순창 · 이형식 · 이춘우 · 최태림 · 남진복 의원 (18명)

### 2. 개정이유

- 통합방위협의회 참여 및 관련 기관 중 기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목적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각 조문에서 알맞게 약칭하도록 변경함(안 제1조)
- 통합방위 시책수립 협의 기관 중 “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” 을 “경상북도경찰청장” 으로 변경함(안 제1조의2)
- 통합방위 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 관련 기관 중 “향토예비군” 을

“지역예비군” 으로 변경함(안 제2조)

- 협의회 위원 중 “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” 을 “경상북도경찰청장” 으로, “국군제202기무부대장” 을 “702군사안보지원부대장” 으로 “포항해양안전경비서장” 을 “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” 으로 변경함(안 제3조)

#### 4. 관련법령

-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
-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

#### 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: 붙임
-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부패영향평가: 붙임
- 해당부서 검토의견: 붙임
-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

#### 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: 2022. 11. 17. ~ 11. 22.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-102호
- 의견제출: 의견 없음

## 7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개정 필요성

- 통합방위협의회 참여 및 관련 기관 중 기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

### 나. 조례안의 주요 내용

- 목적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각 조문에서 알맞게 약칭하도록 변경함(안 제1조)
- 통합방위 시책수립 협의 기관 중 “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” 을 “경상북도경찰청장” 으로 변경함(안 제1조의2)
- 통합방위 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 관련 기관 중 “향토예비군” 을 “지역예비군” 으로 변경함(안 제2조)
- 협의회 위원 중 “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” 을 “경상북도경찰청장” 으로, “국군제202기무부대장” 을 “702군사안보지원부대장” 으로 “포항해양안전경비서장” 을 “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” 으로 변경함(안 제3조)

### 다. 종합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상위법인 「통합방위법」에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참여 및 관련 기관 중 기관명칭이 변경된

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

- 개정 취지와 내용,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